

시 민

문서번호	원무과-15413
결재일자	2017. 10.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소연	김지광	이동문	10/23 남민
협 조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하지혜 代김옥희 代이정묵



2017년도 은평병원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2017. 1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 무 과)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건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자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배 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17년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10월 체육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도모를 위해 추계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7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20845, 2017.9.27.)

II 추진방향

-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자율적인 체육·문화 행사 실시
 - ※ 체육문화행사 진행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III 추진계획

- 행사개요
 - 실시기간 : 2017. 10. ~ 11.
 - 행사운영 : 부서여건과 직원의견을 감안하여 부서별 자체실시
 - 추진일정
 - 10. 31.(화) : 각 부서의 행사계획 수립 후 원무과 제출
 - 10. ~ 11. : 부서별 행사 시행
 - 11.27.(월)限 : 행사 정산결과 원무과 제출
 - 11.30.(목)限 : 행사 정산결과 수합 후 인력개발과 제출

□ 행사비 지원

○ 예산과목 및 산출기준 (총7,332천원)

- 체육행사지원비 : 6,292천원 (26,000원/명, 242명 기준)
 -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1,040천원 (5,000원/명, 208명 기준)
 -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부서별 소요예산

부서	행사 지원비			산출내역
	체육행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합계	
진료부	1,612,000	290,000	1,902,000	체육행사비 62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8명
간호부	3,562,000	600,000	4,162,000	체육행사비 137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0명
약제과	234,000	30,000	264,000	체육행사비 9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명
원무과	884,000	120,000	1,004,000	체육행사비 34명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명
총액	6,292,000	1,040,000	7,332,000	※ 2017. 9. 27. 현원 기준

○ 비예산과목 및 산출기준 (총800천원)

- 기관성과포상금 : 800천원 (20,000원/명, 40명 기준)
 - ※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전공의는 예산배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기관성과포상금 사용

○ 예산지원방법 : 부서별 행사계획서 제출 후, 원무과에 예산 신청

- ※ 체육행사지원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로 교부

V 행정사항

□ 공무원 문화체육행사는 직종별 시행(단체협약 제66조에 근거)

- ※ 별도 시행공문 작성 예정

□ 추계 체육문화행사 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 제출

- ※ 정산결과 지원금액 및 집행금액은 체육행사지원비만 해당

□ 체육행사 장소 이동 시 원무과 차량지원 불가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취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 3. 레크리에이션활동
 -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